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법무법인 선정

나. 예산액: 총 12,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의2호에 따라 '22.12.31.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나. 긴급입찰 사유

○ 법률자문용역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 공백 불가피(기존 계약 종료일: 2022년 4월말)

○ 따라서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운영을 위해 긴급입찰 공고 추진

다. 공고기간* :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